

2022년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3차)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2년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청년 중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초본 교부가 가능한 인원
 - ①가구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인 자
또는, ②120%이하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탈락자(불인정 통지서 제출 필수)
 -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또는 대학교(원) 졸업학년 재(휴)학생인 자
- * 세부 자격 요건은 반드시 '2. 신청 자격' 확인요망
- 2022년도 지원목표 : 1,000명 / 생애 1회 지원
- 3차 모집 목표 : 500명 내외
 - * 3차 모집 시 최종 선정 인원수는 2차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선정 인원 외 예산 상황에 따라 예비 선정 가능(10% 내외 예비자 별도 선정)
- 신청 기간 : 2022. 9. 1. (09:00, 온라인 신청 시작) ~ 9. 30. (17:00, 온라인 신청 마감)
 - * 상기 일정은 온라인 신청 기간이며, 마감일 17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고, 제출 서류는 10. 11.(화) 18시까지 도착 완료하여야 함. 단, 온라인 신청만 하거나,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심사 불가로 탈락됨.

○ 신청 방법 : 희망카드 홈페이지(youthpassdaejeon.kr)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접수

○ 지원 규모 : 최대 300만원* 지원 / 월 50만원 × 6개월

* 지원기간 중 자격 요건이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중단 사유 : 취·창업, 대전시 외 타지역 거주지 이전, 유사사업 중복참여, 해외 장기체류, 진로변경(진학, 유학, 입대 등), 자진포기, 기타 개인사유 등

○ 지원 내용 :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 지원

- 구직활동 지원 : 직접비(교육비, 면접비, 도서구입비, 자격증취득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 구직활동 보고(지원기간 중 1회 필수 제출), 취업연계프로그램 참여(지원기간 중 1회 이상 필수 참여)

○ 지급 방법 : 구직활동 포인트로 지급(매월 1일, 50만 포인트)

○ 사용 방법 : 청년내일희망카드(전용 체크카드) 결제 또는 포인트 결제*

* 구직활동 지원금 사용방법

① 청년내일희망카드 결제 : 카드 선 사용, 후 환급금 신청(사후 환급 방식)

② 포인트 직접 결제 : 희망카드 홈페이지 포인트몰에서 바로 구매

○ 추진 절차

1) (선정 절차) 온라인 신청 → 서류 접수(등기 우편 제출) → 선정 심사
→ 결과발표 → 온라인 교육 및 약정체결(필수, 미참여시 탈락) → 지원 시작

2) (지원 절차) 카드발급 및 포인트 지급(매월 1일 배정 / 지원기간 1개월 이내 카드발급)
→ 구직활동 및 보고서 제출(지원기간 중 1회 필수) → 취업연계프로그램 참여(1회 이상 필수)
→ 설문조사 → 지원종료(6개월 종료)

2

신청 자격

○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1) (연 령)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단, 연령은 온라인 신청 접수 시 만 18세 ~ 만 3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주민등록상 1987. 9. 2. 부터 2004. 9. 30. 까지 출생

(2) (거 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거주 중인 자

* 주민등록 초본 상, 대전광역시로 최종 전입일이 공고일 전일까지여야 함.
(공고일 당일(8. 22일) 전입 시 신청 불가)

(3) (학 력)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①최종학교 졸업자 또는 ②대학교·대학원 졸업학년 재학생

① 최종학교 졸업(자퇴·중퇴·제적 포함)한 자

② 대학교·대학원 졸업학년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은 제외

* 휴학생 : 마지막 학기 미이수자(2학기 이상 미이수자 지원 제외)

* 신청인이 제출한 학력 증빙서류 상 졸업학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임

(4) (미취업)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미취업(미창업) 상태인 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 가능
(주 30시간 미만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 사업자 등록(휴업, 고유번호증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단, 현재 폐업한 상태인 자는 신청 가능)

- (5) (소 득) 신청월 전월 기준 ① 가구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인 자
 ② 120% 이하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탈락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 통지서 제출시 국민취업지원제도 탈락자로 인정, [제출 서류 목록] 참조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단위: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직장	120%	82,112	137,178	177,454	216,279	254,658	296,681	334,652	370,489
	150%	102,842	171,393	223,722	272,614	319,763	370,489	434,898	473,200
지역	120%	36,122	129,070	184,453	233,478	281,796	330,939	369,311	408,122
	150%	77,067	175,541	242,987	303,435	354,661	408,122	472,366	511,899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및 중위소득 산정방법

* 1)의 가구원수와 2)의 고지금액으로 판단

1) 가구원수 산정방법 :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

- ①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또는 모)인 경우 : 부(또는 모) 포함 피부양자수 합산
- ②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인 경우 : 본인 포함 피부양자수 합산

2)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①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상 ② 신청월 기준 전월 ③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확인

<예시> 9월 신청자 : '22. 8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예시 1> '22년 9월 신청자 가구 중위소득 심사 기준 (건강보험 : 22. 8. 1.이전 취득)

- 1)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22년 8월 부양자 및 피부양자수 합산
- 2)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상 '22년 8월 고지금액 확인
(직장 또는 지역 가입 구분)

3)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 120% 이하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탈락자만 신청 가능

<예시 2> '22. 9월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상태 변경된 경우(건강보험 : 22. 8. 2.이후 변경)

-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확인
(신청인 본인의 최근 건강보험 상실일 및 취득일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2)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22년 8월 부양자 및 피부양자수 합산
- 3)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상 '22년 8월 고지금액 확인
(직장 또는 지역 가입 구분)

4)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 120% 이하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탈락자만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탈락사유)

구분	지원 제외 대상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중 졸업학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학년은 학교별 학제에 따라 판단하며, 서류 상 졸업학년 재학 중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제외(또는 탈락사유) 대상 - 휴학생은 마지막 학기 미이수자만 대상(2학기 이상 미이수자는 지원 제외) - 해사대학, 경찰대학, 사관학교 졸업학년 재학생 - 군입대 및 대체복무 예정자는 졸업학년이라도 제외 대상 ◎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 ·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학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은 졸업학년만 신청가능 ◎ 졸업예정자 및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수료자는 참여가능
취 ·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형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근속 기간과 무관 -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고소득 프리랜서,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시간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은 제외 대상 - 사업 신청 후 심사기간 중 근로 시작해도 탈락 또는 중단 사유 * 사업 신청 후 방학 집중근로(국가장학사업), 학점인정 현장실습 등에 참여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요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창업자로 간주 제외 대상(휴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 중이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참여 제외 - 폐업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
중복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업 참여 종료(중단)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대전시 직접 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소기업취업전제 사다리장학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훈련장려금 등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지원교육 등 그 외 타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 일모아시스템 유사사업 참여자 등 * 그 밖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중복(동시)참여 불가 사업이 있으므로 신청시 필히 확인 요망 - 단,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수급 종료 후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기초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 희망카드 지원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해당기관 사전 문의)
재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 2021년 희망카드 사업 참여자 재참여 불가(생애 1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종료자, 지원기간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 도중 중단한 자(취창업, 타지역 이전, 타사업 참여, 부정수급 등)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급학교 진학, 해외 장기체류자(유학, 해외연수 포함), 군입대 예정 및 군 복무중인 자(대체복무 포함), 공무원 합격자 등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 및 접수

○ 신청 · 접수 일정(예정)

온라인 신청	서류 접수	심사.선정	지원기간
9. 1. 09:00 ~ 9. 30. 17:00	9. 1. ~ 10. 11. (18시까지 도착분)	10. 11. ~ (10. 24.이후 결과 발표)	11. 1. ~ 23. 4. 30. (최대 6개월간)

* 상기 일정은 모집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희망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신청 · 접수 방법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접수(등기우편)

☞ 청년내일희망카드 홈페이지 주소 : youthpassdaejeon.kr

☞ 등기우편 주소 :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청년내일희망카드 담당자 앞

[서류 제출 유의사항]

- ◎ 반드시 온라인 신청하고 서류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기한 내 도착하지 않으면 신청 취소됨(온라인 신청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할 경우 접수 불가)
- ◎ 자격 요건 심사이므로 모든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2022. 9. 1.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무시작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 제출 서류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하며, 휴대폰으로 화면 촬영하거나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 등기 발송 서류만 인정(개인 정보 유출우려로 택배, 퀵 등 제출 불가)
* 코로나-19로 별도 방문접수 창구 운영하지 않음
- ◎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담당자의 보완 요청 시 1주일 이내 제출
- ◎ 서류 미비 또는 보완 요청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가 불가하므로 자동 신청 취소 또는 탈락(추후 재신청 가능)
- ◎ 제출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 제출 서류 목록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심사되므로 서류 발급일자 유의

* 2022. 9. 1.이후 발급분 ☞ [붙임1] "구비서류 발급방법" 필독

심사항목		증빙 서류	비고
구직활동 계획 적정성		① 구직활동계획서 1부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인쇄 후 제출
연령 및 거주지		② 주민등록 초본(신청자 본인)	* 모든 정보가 표시되게 발급 (선택발급 X)
		③ 주민등록 등본(전체 이력 포함)	*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발급
학력 (해당 서류 제출)	졸업자	④-1 졸업증명서 1부	* 해외대학 졸업/중퇴자의 경우, 공인된 기관의 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중퇴자	④-2 중퇴확인서(제적증명서) 1부	
	재학생	④-3 재학(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유예)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중 1부	* 졸업학년 증빙 * 학년 표기 필수
미취업	필수	⑤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 상용조회)	* 가입이력 없어도 반드시 인쇄하여 제출
	해당시	* (주 30시간 미만 근로시) 근로계약서	* 해당자만 추가 제출
가구 중위 소득	가구원수	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u>22년 8월</u> 고지액 기준
	자격확인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신청인 본인 자격득실확인서)	
	해당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 통지서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필수 제출)	* 취업지원서비스 불인정 통지서 / 구직촉진수당 불인정 통지서 2장 모두 제출 시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해당자만 추가 제출
개인정보 열람 동의 (소정 양식)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미제출, 미동의 시 심사 불가로 탈락 ☞ 본인 및 가족구성원 서명 필수
-		⑩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서류 제출목록 체크 후 같이 제출

4

심사 및 선정 기준

○ **심사 방법** : 신청 자격기준 등 선발기준* 적합 여부 평가(정량, 정성평가 병행)

* (선발기준) 나이(주민등록번호 기준), 거주지, 미취업 여부, 가구기준 중위 소득, 타사업 중복참여 여부,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 구직활동계획서 실현가능성 및 사업목적 부합 여부, 기타 서류 미비 등 심사

○ **심사 기간** : 온라인 신청 후 2개월 이내

○ **최종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가부 결정으로 최종 선정

○ **결과 발표** : 10월 선정(10. 24.이후 예정)

* 단,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심사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결과발표 일정 변경 시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결과 안내** : 개인별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발송* 또는 희망카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확인

* 청년내일희망카드 홈페이지 주소 : youthpassdaejeon.kr

* 문자발송, 휴대전화 번호, 개인별 이메일은 **사업 신청 시 본인이 작성한 정보로** 통보
⇒ 사업 신청 시 신청자의 오기 입력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온라인 동영상 교육 참여 및 약정체결(비대면 진행)

* 상세 내용은 선정결과 발표 후,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예정(필독)

* 필수 이행과정(약정체결 및 교육) 미 이행 시 최종 취소(탈락)됨

◎ 우선순위* 심사기준 적용

- 자격요건 충족 시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초 지원목표를 고려한 예산 소진이 우려될 경우
우선순위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발

- 우선순위 심사기준 : 가구 중위소득 기준 저소득자순 우선 선정
(단, 소득분위 동점자는 장기 거주자순 우선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이며, 기존 참여자(종료, 중단 등)는 재 참여 불가합니다.
-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은 온라인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온라인 신청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취소(탈락·반려) 됩니다.
-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제출서류 미비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탈락(반려·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단,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자로 선정 되면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관련 기관에 사전 문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약정체결 및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종 선정 취소(탈락)되며, 다음 모집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 자격요건은 신청일부터 선정결과 발표일까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변동(취업·창업, 대전 이외 타지역 주소지 이전, 타 지원사업 참여 등) 발생 시 반드시 본인이 신청 취소하셔야 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허위서류 제출, 자격변동 미신고, 부정사용 등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사후 발견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지원 중단되며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희망카드 담당 전화번호 (☎ 042-719-8325~8)으로 문의하거나 ‘청년내일희망카드 홈페이지 Q&A’ 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구비서류 발급방법

필수 서류	발급 방법
① 구직활동계획서	· 희망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인쇄
② 주민등록 초본	· 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등
③ 주민등록 등본	☞ 2022년 9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④ 졸업 또는 재학 증명서	· 해당대학 행정실, 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등 · 해외대학 졸업(제적) 등의 경우 공인된 기관 또는 번역행정사의 번역·공증 필요 ☞ 2022년 9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 / 상용조회)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이용할 경우 ①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이력) ② 출력할 날짜 : 2022.01.01. ~ 2022.09.30. ·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omwel.or.kr) 이용할 경우 ① 개인/일반근로자 로그인 ② 증명원 신청/발급 ③ 개인>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④ 선택[보험구분 : 고용 / 조회구분 : 상용] 후 조회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인쇄 후 제출 ☞ 2022년 9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해당자만)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상실일이 없는 경우(근로중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 근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⑥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또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이용(T.1577-1000) ① 개인 로그인(지원자 본인 또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공인인증서 필요) ② 민원여기요>개인민원>증명서 발급/확인
⑦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격확인서 (모두 선택) - 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체크 / 2022년 전체분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체 발급)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자 본인 기준)	* 직장 건강보험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므로, 희망카드 신청자가 주보험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발급 요청하여야 함 ☞ 2022년 9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신청월 기준 2022년도 전체 납부내역이 나와야 함
* (해당자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 통지서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발급 문의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서명 후 제출(※ 본인 및 가족구성원 서명 필수)
⑩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서명 후 제출

[붙임 2]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항목 및 불가항목(예시)

☞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용설명서' 참고(선정 후 예비교육 및 약정체결 시 배포)

지원 항목	지 원 범 위	지원 불가(부정수급 조치)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 진로 및 창업교육비, 자격증 취득 학원비 등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요령 등 컨설팅 비용 ☞ 30만원 이상은 소명환급 * 단, 헬스장, 수영장 등 체력단련비 및 예체능 학원비의 경우 취미활동이 아닌 취업 희망분야와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금액 관계 없이 소명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 관련 입시학원, 대학등록금, 학점은행제 등록비 등 · 면허 취득 후 연수비, 신체검사비 · 교육비 환불내역 미신고 등
면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원 이하 정장 및 구두 구입비(지원기간 중 1회) · 면접을 위한 헤어비, 메이크업비, 증명사진 촬영비 · 정장대여비 * 면접용 정장대여사업 중복참여 가능 · 숙박비 : 시외 지역 면접·시험 응시 등으로 숙박(1박) ☞ 면접 관련성 확인을 위해 금액 관계 없이 소명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성급 호텔, 짐질방 등 · 면접 목적 외 사용 건 · 면접비 환불내역 미신고 등
자격증 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등록비 (접수비, 등록비, 재발급 비용 등 제반 비용 포함), 각종 시험 응시료 등(어학, 한국사 등) ☞ 30만원 이상은 소명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결제 불가 예시) 토약(○) 토폴(×) · 신체검사비 · 시험응시료 환불내역 미신고 등
도서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 준비 관련 도서, 자기개발, 진로탐색 등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 ☞ 자산성 물품 구매 등 목적 외 사용 가능 항목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소명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도서 중복 구매 건 · 자산성 물품 구매 건 (예) 음반, 다이어리, 달력, 가계부, 사무용품 등 · 잡지류, 신문, 정기구독, 만화, 성인물, 고등학교 이하 도서 등
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성 대중교통비 : 기차, 고속(시외)버스, 지하철, 택시비 등 · 후불교통비(시내 버스, 지하철 등) - 후불교통은 희망카드 발급 시 교통카드 기능 선택 - 신용불량 등으로 희망카드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불가 ☞ 교통비 사용 건은 자동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권, 정액권, 주유비, 주차비, 전기충전비, 선박/항공료, 고속도로 통행료, 렌트카, 공유 자전거, 킥보드 대여비 등 · 지원 종료일 이용한 후불교통건 - 지원기간 종료 후 청구되는 건으로 지원불가
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0만원 한도 이내 사용 가능(식비 한도는 이월 불가) ☞ 일반음식점은 자동환급 일부 업종은 지원불가항목 확인을 위해 소명환급 * 마트, 편의점, 슈퍼, 백화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 담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생활용품 등 자산성 물품

* 업종(코드) 분류 특성상 자동환급 항목이라도 소명환급 메뉴에서 조회될 수 있음

* **소명환급 건은 증빙자료 보관 후 제출(필수)**

* 본인 외 타인 명의 사용 항목은 지원 불가

[붙임 3] 청년내일희망카드(하나체크카드) 사용 시 제한업종(예시)

업종코드	업종명
의류/잡화	
1104	아동.유아복
1105	아동복
1108	모피.무스탕
1201	커튼.카펫.수건
1202	침구및수예품
1402	시계.귀금속
1403	안경.광학제품
1405	가방.핸드백
1502	유형.사치용품
건강식품	
2201	건강보조식품
2202	인삼전문점
2203	한국인삼공사
주점	
2601	일반주점
2602	주류전문점
2603	단란주점
2604	기타주점
전자/사무	
3104	기타전자제품
3201	컴퓨터및소프트웨어
3202	통신기기
3203	철재,사무용가구
3204	기타사무용기기
인테리어	
3405	실내장식(인테리어)
3501	중고품판매점
3502	기타가정용품
3503	기타장비임대
부동산/서비스	
3601	기타부동산관련업
3602	부동산중개
3701	사업시설청소관리
3702	경비업
3801	웨딩토탈서비스

업종코드	업종명
의료	
4101	종합병원
4102	일반병원
4103	한방병원
4401	의약품판매
4402	약국
4403	한약방
4501	기타약품.의료기기
유통/판매	
5104	면세점
5504	PG대학등록금
5506	PG(공공서비스)
5601	홈쇼핑
5602	통신.방문판매
5702	방문판매
5703	다단계
숙박/여행	
6101	호텔(특급)
6201	여행사
6202	여행지원서비스
6204	차량임대(렌터카)
교통/자동차	
6305	여객선
6306	항공사
6307	외항항공사
6308	기타승객운송업
6501	차량부품.용품
6502	자동차정비
6503	자동차전문수리
6702	세차장
6703	차량견인서비스
6704	도로시설운영
6705	고속도로통행카드
6601	주유소
6602	주유소(LPG)
6603	기타연료판매

업종코드	업종명
문화/취미	
8102	문구,사무용품
8103	비디오,음반
8104	악기판매점
8105	기타레저,스포츠용품
8107	카메라,캠코더
8108	오락용품판매
8117	완구
8118	총포류
8119	화방,표구점
8121	전문스포츠용품점

스포츠/레저	
8301	경기장
8302	골프장
8303	스키장
8307	볼링장
8308	당구장
8309	골프연습장
8310	기타취미,레저,스포츠
8401	성인오락실
8402	노래방
8403	무도장

업종코드	업종명
유흥	
8601	유흥주점
8602	나이트클럽
8603	안마시술소

보험/서비스	
9101	생명보험
9102	손해보험
9103	기타보험
9201	전화요금
9202	통신재판매업
9203	우편요금
9204	공공서비스,요금
9208	인터넷서비스요금
9301	기타화물운송업
9401	영상/음향물제작
9511	기타전문서비스

상품권/기타	
9604	회원권증개/판매
9605	일반상품권
9606	온라인상품권
9802	기타개인서비스

* 기타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행성 업종 및 자산형성 업종 등 제한 업종이 있으므로 희망카드 사용 설명서 지원제외항목 숙지 필수(사용제한 업종·품목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 중단 등 조치)

*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카드를 사용할 경우, 부정수급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